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유니에대부유한회사

2. 조치일 : 2022. 7. 21.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매입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① 소멸시효 완성일 관리 철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제9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에 대해 추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보유중인 매입채권의 소멸시효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보유중인 일부 매입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도 입력하지 않아 소멸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을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입력·관리하는 등 매입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② 신용정보등록 업무절차 마련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13조에 의하면 회사는 일반신용정보의 등록·해제·정정·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전산망을 통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신용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제하여야 하는데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취득한 대출채권에 대한 별도의 정확성 검증절차 없이 채권 양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해당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그대로 등록하고 있어 오류등록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등록하기 이전에 채권 양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사전검증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⑵ 채권추심 수탁회사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6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회사가 사용중인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23조 및 <별표9>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표준(안)'과 달리 채권추심 수탁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관련 법규준수 의무 조항과 위법행위에 따른 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채권추심 수탁회사의 법규준수 소홀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를 표준안에 따라 보완하는 등 채권추심 수탁회사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 위반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 수탁회사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